

골프 카트용 타이어 및 림 서브 어셈블리

I 사례 개요

사 례 번 호: NY N356961 (2026.01.08.)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최종 수출국: 베트남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골프카트 장착용	
재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림 •중앙 더스트 캡 •밸브 스템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 타이어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p>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duction process. It starts with 'Sourcing' in China, where aluminum rims, dust caps, and valve stems are produced. These components are then shipped to Vietnam for 'Manufacturing'. The manufacturing steps are: STEP 1: Importing Chinese parts, STEP 2: Producing rubber tires, and STEP 3: Inflating with air and final assembly. The final product is then exported from Vietnam.</p>	
	상세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 수입 •고무 타이어 생산 •림에 밸브를 장착하고 이를 턴테이블에 고정 •림에 타이어를 장착한 뒤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이어 상부 및 하부 비드를 림 홈에 압입 •공기 주입 •밸브 캡과 허브 커버 장착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CBP의 NY N317959 (2021.03.08.) 판정을 인용하며, 타이어 및 림 서브 어셈블리의 원산지가 베트남 이라고 주장

《CBP의 판정》

- ⊙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중국산 부품의 비용이 베트남산 부품 비용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타이어 및 림 서브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중국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IV 시사점

- ⊙ CBP는 타이어 및 림 서브 어셈블리에 본질을 부여하는 부품을 선별하는 경우, 타이어와 림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부품으로 고려함
- ⊙ 이에 따라 총체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바,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진 공정 수준, 발생한 부가가치 혹은 비용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 본 사례의 경우, 부품 생산에 발생한 비용을 고려하여 중국산 부품의 비용이 베트남산 부품 비용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판정함

신청인이 인용한 CBP 판정 사례

물품명	타이어 및 휠 서브 어셈블리
사례번호	NY N317959 (2021.03.08.)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휠 생산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어링 생산 •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 및 밸브 생산 - 베어링 압입, 밸브 조립, 타이어 장착, 공기 주입 등의 최종 조립 수행
판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에서 수행되는 최종 조립은 복잡하지 않음 • 타이어나 강철 휠 어느 것도 최종 제품의 본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게 우세하지 않음 • 공정의 복잡성과 무관하게 조립 작업이 대만에서 이루어지며, 작업 공정의 대부분과 제조 비용의 대다수가 대만에서 발생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